

|       |              |
|-------|--------------|
| 의안번호  | 2200308      |
| 의 퇴 인 | 이용선 의원       |
| 회 답 일 | 2024. 6. 20. |
| 추계번호  | 24B0729      |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단축하고, 공항소음대책 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3억 2,200만원(연평균 18억 6,4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 계   | 연평균   |
|-----------------------------------------|-------|-------|--------|-------|-------|-------|-------|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안 제5조 제1항)           | 3,230 | 0     | △3,230 | 3,230 | 0     | 3,230 | 646   |
|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 지원 기간 확대(안 제8조제1항 제3호) | 1,215 | 1,217 | 1,218  | 1,220 | 1,222 | 6,092 | 1,218 |
| 합계                                      | 4,445 | 1,217 | △2,012 | 4,450 | 1,222 | 9,322 | 1,864 |

- 주: 1. 향후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단가 변동, 일반주민 세대당 지원 단가 변동 및 학교·시설의 전기료 사용액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최근 4년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의 재원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 기간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중 국비가 25%, 시설관리자 부담이 75%라고 가정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Ⅱ.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br>※ 현재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 <sup>1)</sup> 을 3년마다 하도록 개정 | 의무규정 |
| 2  |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1항제3호    | 시설관리자가 시행하는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규정                                                                                                                                                    | 의무규정 |
| 3  |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1항제3호    | 시설관리자가 시행하는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장”을 추가                                                                                                                                             | 의무규정 |
| 4  |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1항제5호 신설 | 공항소음대책사업에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추가                                                                                                                                                                        | 의무규정 |
| 5  | 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제2호        |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                                                                                                                                                                       | 의무규정 |
| 6  | 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항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주민지원사업비 부담 비율을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00분의 90을 넘지 않는 범위”로 확대                                                                                                                  | 의무규정 |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br>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1항          | ○        | •최근 지정 고시를 위한 조사 단가 활용                                                                                                                                                                |
| 2  |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1항제3호     | ○        | •2023년 지원 실적 활용                                                                                                                                                                       |
| 3  |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1항제3호     |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br>- 개정안에 따라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영세사업장을 추가할 경우 공항소음대책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될 영세사업장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알 수 없음 |
| 4  |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1항 제5호 신설 |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br>- 공항소음대책사업에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세부 지원항목,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을 알 수 없음                                 |
| 5  | 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제2호         | —        | •미대상: 현행 예산 내에서 집행<br>-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정해진 범위의 예산(약 100억원) 내에서 공항별로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종류에 직업훈련 지원이 포함되더라도 지원사업 종류가 늘어날 뿐 추가 재정이 소요되지는 않을 예정임                           |
| 6  | 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항            | —        | •미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 부담 감소 예상<br>-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공항 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자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75%에서 90%로 늘릴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25%에서 10%로 감소 예상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현행 사업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 및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 안 제8조의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중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을 지원하는 사업 비용은 추계기간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sup>2)</sup>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의 부담은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의 평균 비용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국비 25%, 시설관리자 부담 75%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 (안 제5조제1항)
  -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항공수요의 급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3)</sup>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2.2  | 2.2  | 2.1  | 2.1  | 2.1  |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 최근 공항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 6개 공항의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주기는 김해공항 2년, 제주공항 4년 6개월, 김포공항 5년 6개월, 인천공항 7년, 울산 및 여수 공항 12년 등이었음

[표 2]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현황

| 구 분  |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          | 울산          | 여수          |
|------|-------------|-------------|-------------|-------------|-------------|-------------|
| 최초고시 | 2010.11.30. | 1993.06.21. | 1994.09.01. | 1993.07.01. | 2006.12.05. | 2006.12.05. |
| 변경고시 | 2016.01.06. | 2010.10.08. | 2004.10.25. | 2008.1.29.  | 2023.01.01. | 2023.01.01. |
|      | 2023.01.01. | 2017.06.30. | 2014.02.07. | 2012.12.27. | 2023.01.02. |             |
|      |             | 2023.01.01. | 2020.12.24. | 2018.05.29. |             |             |
|      |             |             | 2023.01.01. | 2023.01.01. |             |             |

자료: 국토교통부

- 6개 공항 모두 2023년 1월에 소음대책지역이 변경 고시되었는데, 공항별로 최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비용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소음영향도 조사 기간은 짧게는 9개월(김포, 김해 공항)에서 길게는 1년 11개월(인천공항) 가량 소요되었고, 조사 비용은 6개 공항 합하여 32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표 3]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간                                          | 비용    |
|---------|----------------------------------------------|-------|
| 인천공항    | (1차) '19. 5 ~ '20.12<br>(2차) '22. 1 ~ '22. 5 | 905   |
| 김포공항    | '20. 3 ~ '21.12                              | 865   |
| 김해공항    | '22. 3 ~ '22.12                              | 425   |
| 제주공항    | '21. 5 ~ '22. 5                              | 610   |
| 울산·여수공항 | '20. 4 ~ '21.12                              | 425   |
| 총 액     | -                                            | 3,230 |

자료: 국토교통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단가가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단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32억 3,000만원(연평균 6억 4,600만원)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최근 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지정·고시 전 2년에 걸쳐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비용을 조사 완료 시점에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추계기간인 2025~2029년 동안 현행 기준으로는 2027년에 한 번 소음영향도 조사 비용을 집행하게 되고, 개정안 기준으로는 2025년 및 2028년에 각각 집행하게 되어 조사 비용이 1번 더 소요될 예정

[표 4]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계    | 연평균 |
|-------------|------|------|-------|------|--------|-------|------|-------|-----|
| 3년 주기(A)    | 고시   | -    | 3,230 | 고시   | -      | 3,230 | 고시   | 6,460 | -   |
| 5년 주기(B)    | 고시   | -    | -     | -    | 3,230  | 고시    | -    | 3,230 | -   |
| 추가재정소요(A-B) | 0    | 0    | 3,230 | 0    | △3,230 | 3,230 | 0    | 3,230 | 646 |

- 주: 1. 향후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단가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안 제8조제1항제3호)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고<sup>4)</sup>,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부담 사업비를

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재원으로 시설관리자가 조성하여야 함<sup>5)</sup>

- 최근 4년간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사업에 사용된 비용의 재원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국비가 사용된 경우도 있고 시설관리자 부담 사업비만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4년 간 사업비 총 542억 8,700만원 중 국비가 136억 3,400만원(25.1%), 시설관리자 부담비가 406억 5,300만원(74.9%)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의 25%를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가정

[표 5]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재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합계       |          |
|---------------|---------------|-------|----------|----------|----------|----------|----------|----------|----------|----------|----------|----------|
|               |               |       | 지원<br>건수 | 지원<br>금액 | 지원<br>건수 | 지원<br>금액 | 지원<br>건수 | 지원<br>금액 | 지원<br>건수 | 지원<br>금액 | 지원<br>건수 | 지원<br>금액 |
| 전기<br>료<br>지원 | 학교(개교)        | 소계    | 56       | 634      | 57       | 686      | 57       | 777      | 65       | 953      | 235      | 3,050    |
|               |               | 국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공사부담비 | 56       | 634      | 57       | 686      | 57       | 777      | 65       | 953      | 235      | 3,050    |
|               | 주민(세대)        | 소계    | 85,541   | 16,292   | 84,867   | 16,382   | 11,885   | 2,275    | 80,949   | 15,735   | 263,242  | 50,684   |
|               |               | 국비    | 0        | 0        | 24,234   | 4,678    | 0        | 0        | 44,781   | 8,956    | 69,015   | 13,634   |
|               |               | 공사부담비 | 85,541   | 16,292   | 60,633   | 11,704   | 11,885   | 2,275    | 36,168   | 6,779    | 194,227  | 37,050   |
|               | 노유자<br>시설(개소) | 소계    | 0        | 0        | 155      | 152      | 164      | 171      | 195      | 230      | 514      | 553      |
|               |               | 국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공사부담비 | 0        | 0        | 155      | 152      | 164      | 171      | 195      | 230      | 514      | 553      |
|               | 합계            | 소계    | 85,597   | 16,926   | 85,079   | 17,220   | 12,106   | 3,223    | 81,209   | 16,918   | 263,991  | 54,287   |
|               |               | 국비    | 0        | 0        | 24,234   | 4,678    | 0        | 0        | 44,781   | 8,956    | 69,015   | 13,634   |
|               |               | 공사부담비 | 85,597   | 16,926   | 60,845   | 12,542   | 12,106   | 3,223    | 36,428   | 7,962    | 194,976  | 40,653   |

자료: 국토교통부

- 현행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은 학교, 일반주민, 노유자시설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냉방시설에 사용한 전기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학교별로 5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주민 주거용 시설은 세대별로 월 5만원을, 노유자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sup>6)</sup>

5)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① 공향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향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향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향수익을 말한다.

[표 6]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 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
| 학교(개교)    | 686    | 777   | 953    |
| 일반주민(세대)  | 16,382 | 2,275 | 15,735 |
| 노유자시설(개소) | 152    | 171   | 230    |
| 합 계       | 17,220 | 3,223 | 16,918 |

주: ‘22년도부터 일반주민 전기료는 팬데믹 기간 예산확보가 어려워 차년도(‘23년)에 지연 집행(즉, ‘23년 예산으로 ‘22년 미집행 전기료를 집행, ‘24년 예산으로 ‘23년 미집행 전기료 집행 중)  
자료: 국토교통부

- 2023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지원 기간을 기존 4개월(6~9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되는 재정 소요는 연 48억 5,900만원으로 예상

[표 7] 지원 기간 확대에 따른 사업대상별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 4개월 지원<br>(현행, A)    | 5개월 지원<br>(개정안, B) | 추가재정소요<br>(B-A) |
|------------|----------------------|--------------------|-----------------|
| 학교(개교)     | 953                  | 1,191              | 238             |
| 일반주민(세대)   | 18,154 <sup>1)</sup> | 22,693             | 4,539           |
| 노유자시설(개소)  | 230                  | 288                | 58              |
| 공동이용시설(개소) | 98 <sup>2)</sup>     | 122                | 24              |
| 합 계        | 19,435               | 24,294             | 4,859           |

주 1) ‘22년도부터 일반주민 전기료 예산 부족으로 차년도 예산에서 추가 집행 중이어서 일반주민 지원액은 고시된 세대 지원을 기준으로 함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24.2월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음. 노유자시설 지원 기준과 동일 기준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 추계 기간(2025~2029) 중 일반주민 세대당 지원 단가의 변동이 없고, 학교 및 시설 등 상한액 내에서 설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전기료 사용액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43억 6,500만원이고, 그 중 국비는 25%인 60억 9,200만원(연평균 12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계     | 연평균   |
|------------|-------|-------|-------|-------|-------|--------|-------|
| 학교(개교)     | 238   | 243   | 248   | 253   | 258   | 1,240  | 248   |
| 일반주민(세대)   | 4,539 | 4,539 | 4,539 | 4,539 | 4,539 | 22,695 | 4,539 |
| 노유자시설(개소)  | 58    | 59    | 60    | 61    | 62    | 300    | 60    |
| 공동이용시설(개소) | 24    | 25    | 26    | 27    | 28    | 130    | 26    |
| 합계         | 4,859 | 4,866 | 4,873 | 4,880 | 4,887 | 24,365 | 4,873 |
| 국비지원(25%)  | 1,215 | 1,217 | 1,218 | 1,220 | 1,222 | 6,092  | 1,218 |

- 주: 1. 향후 일반주민 세대당 지원 단가 변동 및 학교·시설의 전기료 사용액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최근 4년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의 재원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 기간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중 국비가 25%, 시설관리자 부담이 75%라고 가정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 사업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 및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만 추계하였음

- 본 추계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단가가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고,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 별 지원 단가가 유지되거나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단가 변동, 일반주민 세대당 지원 단가 변동 및 학교·시설의 전기료 사용액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의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박인재 | 이유미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박인재 | 02-6788-4650 | powerreset@assembly.go.kr |

[참고자료 1] 소음피해지원사업비 재원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 소음피해지원사업비 재원 조성 현황: 2015~2024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합계                            | 49,316 | 55,161 | 53,776 | 54,498 | 55,691 | 44,773 | 55,537 | 43,585 | 43,300 | 53,197 |
| -국고                           | —      | —      | —      | —      | —      | —      | 9,015  | 9,155  | 4,807  | —      |
| -소음부담금                        | 8,500  | 8,147  | 9,850  | 9,260  | 8,420  | 7,800  | 9,902  | 7,768  | 9,093  | 5,782  |
| -시설관리자<br>사업비<br>(착륙료의 75% 등) | 40,816 | 47,014 | 43,926 | 45,238 | 47,271 | 36,973 | 36,620 | 26,674 | 29,400 | 47,415 |

자료: 국토교통부

□ 소음피해지원사업비 집행 현황: 2015~2024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합계          | 44,803 | 26,750 | 36,657 | 63,356 | 72,787 | 68,973 | 53,937 | 43,585 | 43,300  | 53,197 |
| -소음대책사업     | 19,834 | 16,919 | 21,932 | 43,482 | 62,826 | 59,039 | 43,943 | 33,592 | 32,482  | 41,997 |
| -주민지원사업     | 24,969 | 9,831  | 14,725 | 19,874 | 9,961  | 9,934  | 9,994  | 9,993  | 10,818* | 11,200 |
| (75%지원)     | 20,184 | 7,270  | 10,058 | 14,355 | 8,424  | 5,657  | 6,373  | 7,180  | 6,690   | 미정     |
| (66~74% 지원) | 45     | 45     | 710    | 1,349  | 38     | 86     | 119    | 342    | 317     |        |
| (65%지원)     | 4,591  | 2,442  | 3,770  | 4,157  | 1,449  | 1,634  | 1,367  | 1,417  | 1,670   |        |
| (65%미만 지원)  | 149    | 74     | 187    | 13     | 50     | 2,557  | 2,135  | 1,054  | 1,284   |        |

주: 66~74% 지원, 65%미만 지원은 각각 75%와 65% 지원 사업에 해당하나, 지자체가 사업비를 초과 부담한 사업

\*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비 857백만원이 포함됨(공항공사에서 사업비 100% 부담)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2]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지정기준 및 사업내용

[표]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지정기준 및 사업내용

| 구역    |       | 소음영향도<br>(LdendB(A)) <sup>1)</sup> | 사업내용            |                                                                                          |
|-------|-------|------------------------------------|-----------------|------------------------------------------------------------------------------------------|
| 제1종구역 |       | 79 이상                              | • 손실보상,<br>토지매수 | • 주택 방음냉방시설 설치<br>• 학교 방음냉방시설 설치<br>•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br>• 전기요금(학교, 주민, 노유자시설)<br>• 주민지원사업 등 |
| 제2종구역 |       | 75이상~79미만                          |                 |                                                                                          |
| 제3종구역 | ‘가’지구 | 70이상~75미만                          |                 |                                                                                          |
|       | ‘나’지구 | 66이상~70미만                          |                 |                                                                                          |
|       | ‘다’지구 | 61이상~66미만                          |                 |                                                                                          |
| 인근지역  |       | 57이상~61미만                          | • 주민지원사업 지원     |                                                                                          |

주: 1)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FAA(미국연방항공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법으로 등가소음도 (Leq)\*에 저녁시간 (19:00~22:00)에는 5dB, 야간시간대(22:00~07:00)에는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 단위

\* 등가소음도(Leq: Equivalent Sound Level)란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

자료: 국토교통부